

제38/2026/TT-NHNN호 통첩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관리

주요 변경사항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제06/2019/TT-NHNN호 통첩 대체

목차

이 문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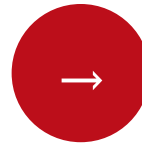
01	투자등록증 발급 전에도 투자자본계좌 개설 가능	03	06	여러 통화로 출자 시 환산 기준통화 선택	08
02	정관자본 증액 등록 전에도 출자금 송금 가능	04	07	투자자본계좌 폐쇄 후 자금의 흐름	09
03	투자자본계좌 폐쇄 사유 4가지로 확대	05	08	모든 송금지시서에 금액과 목적 명시 의무화	10
04	외화 투자자본계좌 의무 개설 폐지	06	09	은행에 증명서 추가 제출 의무	11
05	베트남 내 재투자를 위한 자본 및 이윤 보유	07	10	직접투자자본계좌 명칭 변경	12
제38/2026호 통첩 적용 방식에 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13	시행 시기 및 경과규정		14

1. 투자등록증 발급 전에도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이전

규정 없음

제06/2019호 통첩은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또는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투자 준비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투자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제조직은 정관자본을 수령할 투자자본계좌가 없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즉시 투자자본계좌 개설 가능

증명서 발급 또는 조정 전에 외화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동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정관자본 수령, 잔액 이자 수령, 투자 준비비용 지급, 미발급 시 자본 반환의 네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조 제3항 원문 — 제06/2019호 통첩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제7조. 투자자본계좌의 개설 및 사용 원칙

3.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 · 조정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은 **투자등록증이 발급 · 조정되기 전에 동일한 인가 은행 1곳에 외화 투자자본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동 투자자본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정관자본 및 계좌 잔액 이자 수령, 베트남 내 투자 준비활동과 관련된 적법한 비용 지급, 그리고 투자자** 또는 구성원기업에 대한 자본 반환(투자등록증이 발급 · 조정되지 않는 경우)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투자등록증이 발급 · 조정된 후, 해당 주체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외화 종류의 투자자본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개설한 투자자본계좌를 이용하여 본 통첩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입출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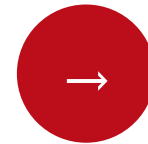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3조 및 제5.4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8.1조와 대조

2. 정관자본 변경 등록 전에도 출자금을 송금할 수 있음

이전

등록 및 증빙서류 구비 후에만 자본 변경 가능

제06/2019호 통첩은 투자등록증, 출자·주식매수 조건 충족 통지서, 체결된 PPP계약 또는 출자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에 기재된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출자를 허용했으며, 예외가 없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등록 전에도 자본 변경을 위한 출자 가능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4.1조 및 제4.5조는 예외를 규정하여, FDI 기업이 먼저 증자한 후 나중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원문

제4조. 일반원칙

1. 투자자, 구성원기업은 투자등록증, [...] 기업등록증, 권한 있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PPP계약, BCC계약, 석유계약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외화 또는 베트남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본조 제5항에 따른 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투자자, 구성원기업은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이 정관자본 증액, 출자액 변경 또는 출자비율 변경에 관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출자, 출자액 변경 또는 출자비율 변경을 위하여 투자자본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4.1조 및 제4.5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4.1조와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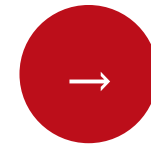
3. 투자자본계좌 폐쇄 사유를 4가지로 규정(기존 2가지에서 확대)

이전

폐쇄 사유 2가지 규정

제06/2019호 통첩 제5.6조(제03/2025/TT-NHNN호 통첩에 따라 개정)는 다음의 경우에만 계좌 폐쇄를 규정했다: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 기업이 주식이 상장되거나 거래 등록된 공개회사가 되는 경우.



2026년 8월 18일부터

폐쇄 사유 4가지 규정

- 더 이상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증명서를 발급·조정받지 못하고 자본을 반환한 경우;
- 해산, 파산, 운영 종료의 경우;
- 프로젝트 양도로 최초 등록된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조 제5항 a호 및 제19조 제3항 원문

제7조. 투자자본계좌의 개설 및 사용 원칙

5. 투자자본계좌를 해외 차입금, 대외채무 상환 또는 기타 적법한 지급의무 이행에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통첩 제6조에 규정된 주체는 다음 원칙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a) 본 통첩 제6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주체는 다음의 경우 이미 개설한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i) 해당 경제조직에 더 이상 지분·출자액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이 없는 경우; (ii) 투자법령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조정받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에게 출자금을 반환한 경우; (iii) 법령에 따라 해산, 파산, 운영이 종료된 경우; (iv) 투자프로젝트 양도로 해당 경제조직의 최초 등록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19조. 경과규정

3. 본 통첩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 통첩 제7조 제5항 a호 (i) 및 (ii)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하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주체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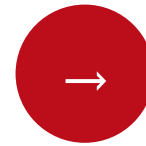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5.a조 및 제19.3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5.6조(제03/2025/TT-NHNN호 통첩 제11.3.b조에 따라 개정)와 대조

4. 외화 투자자본계좌 의무 개설 폐지

이전

외화계좌 개설 의무

제06/2019호 통첩은 인가은행 1곳에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베트남동 계좌는 해당 외화계좌를 개설한 바로 그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외화 및/또는 베트남동

베트남동으로만 출자하고 거래하는 투자자는 더 이상 별도로 외화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여러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 각 통화별로 1개씩 계좌를 개설하되, 여전히 동일한 인가은행에서 개설해야 한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조 제1항 원문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5조 제2항과 대조

제7조. 투자자본계좌의 개설 및 사용 원칙

1. 본 통첩 제6조에 규정된 주체는 ~~인가은행 1곳에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나~~ **동일한 인가은행 1곳에 외화 투자자본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동 투자자본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여러 외화로 출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인가은행 1곳에 각 외화별로 투자자본계좌 1개를 개설하여 본 통첩 제8조에 따른 입출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1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5.2.a조 및 제5.2.c조와 대조

5. 해외로 송금하지 않는 자본 및 이윤은 지급계좌로 이체하여 베트남 내 재투자 가능

이전

해외 자본 송금만 규정

제06/2019호 통첩은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통해 자본, 이윤 및 기타 적법한 수입을 해외로 송금하도록 강제했으며, 투자자가 자금을 베트남 내에 보유하여 재투자하는 경우의 경로는 규정하지 않았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신규 규정: 지급계좌로 이체하여 재투자 가능

감자, 양도, 프로젝트 종료 시의 자본(제11.2조) 및 이윤, 적법한 수입(제12.2조) 모두에 적용되며, 투자법령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원문 — 제06/2019호 통첩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제11조. 감자, 양도, 종료, 청산 또는 계약 · 투자프로젝트 종료 시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의 자본 이전

2. **해외로 송금하지 않거나 베트남 내 국제금융센터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본계좌에서 해당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이 인가은행에 개설한 지급계좌로 이체하여, 투자법령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이 베트남 내 다른 프로젝트, 투자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의 이윤 및 적법한 수입의 이전

2. **이윤 및 적법한 수입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거나 베트남 내 국제금융센터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본계좌에서 해당 외국인투자자, 구성원기업이 인가은행에 개설한 지급계좌로 이체하여 [...] 투자법령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 투자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1.2조 및 제12.2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9.1조와 대조

6. 여러 통화로 출자 시 하나의 환산통화를 선택하여 통일적으로 사용

이전

규정 없음

제06/2019호 통첩은 출자통화가 기개설된 직접투자자본계좌의 통화와 다른 경우에만 외화 환전을 허용했으며, 여러 통화로 출자할 때 출자총액을 확정하는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2026년 8월 18일부터

하나의 환산통화를 통일적으로 사용

환산 후 출자총액은 서류상 확정된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환산환율은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바로 그 은행이 자금이 계좌에 입금(대변 기재)되는 시점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4조 제1항 제2단락 원문 — 제06/2019호 통첩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제4조. 일반원칙

1. [...] 여러 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 구성원기업은 본항에 규정된 서류에 기재된 출자통화 중 하나를 환산통화로 선택하여 출자총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출자 전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산 후 출자총액은 위 서류에서 확정된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환산환율은 본 통첩 제6조에 규정된 주체가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인가은행이 자금이 투자자본계좌에 입금(대변 기재)되는 시점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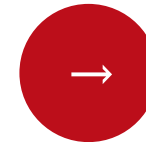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4.1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6.1.đ조와 대조

7. 투자자본계좌 폐쇄 후, 반환자본 및 수입은 지급계좌를 경유하거나 해외로 직접 송금

이전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제06/2019호 통첩은 기업이 해산, 파산, 소멸, 또는 투자프로젝트 양도로 최초 등록 법인이 변경되어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계좌 사용을 허용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폐쇄 사유 4가지 전부에 적용

이후 발생하는 반환자본 및 기타 적법한 수입은 해당 외국인투자자가 인가은행에 개설한 외화 또는 베트남동 지급계좌로 이체되거나, 해외로 직접 송금된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조 제5항 c호 원문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9조 제2항과 대조

제7조. 투자자본계좌의 개설 및 사용 원칙

c) 본항 a호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한 경우, **해당 경제조직 자체에서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 또는 투자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반환자본, 기타 적법한 수입** 및 베트남 내 국제금융센터에서 베트남 나머지 지역으로의 투자활동 또는 해당 경제조직 자체에서의 구성원기업 투자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적법한 수입은 다음으로 이체된다:

(i) 외국인투자자가 인가은행에 개설한 외화, 베트남동 지급계좌 또는 해외 송금;

(ii) 인가은행에 개설한 외화, 베트남동 지급계좌 또는 구성원기업이 구성원은행에 개설한 자본계좌.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7.5.c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9.2조와 대조

8. 모든 송금지시서에 금액과 송금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이전

규정 없음

제06/2019호 통첩은 인가신용기관이 지도, 점검하고 서류·증빙을 보관하도록 요구했을 뿐, 자금흐름 투명성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을 강제하지 않았고 개별 송금지시서에 대한 요건도 두지 않았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송금 내용 및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은행은 각 송금지시서에 금액과 송금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내부규정을 두어야 한다. 투자자는 거래내용, 송금목적을 명확히 기재할 책임이 있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4조 제2항 원문 — 제06/2019호 통첩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제14조. 인가은행의 책임

2. 투자자본계좌의 개설·사용에 관한 서류, 순서,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투자자, 구성원기업에 대한 송금 시 자금흐름 투명성에 관한 규정(각 송금지시서에 금액 및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포함)을 제정하고**, 투자자, 구성원기업이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공개 통지한다.

제15조. 투자자, 구성원기업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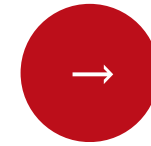
2. **거래내용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활동과 관련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며**; 인가은행의 요청 및 지도에 따라 관련 서류, 증빙을 제공하고; 인가은행에 제공한 각종 서류, 증빙의 진실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스스로 책임진다.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4.2조 및 제14.7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11조와 대조

9. 발급 · 조정 후 은행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이전 규정 없음

제06/2019호 통첩은 거래내용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인가신용기관의 요청 및 지도에 따라 서류, 증빙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뿐이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은행에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은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 또는 조정받은 즉시,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제15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5조 제3항 원문 — 제06/2019호 통첩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제15조. 투자자, 구성원기업의 책임

....

3.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 · 조정받은 후,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체는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인가은행에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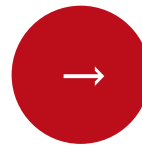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15.2조 및 제15.3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12조와 대조

10. 직접투자자본계좌가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로 명칭 변경

이전

직접투자자본계좌

제06/2019호 통첩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인가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 직접투자자본계좌라고 칭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

“직접투자자본계좌”와 “외국인직접투자자본계좌” 모두를 대체하는 새로운 명칭이 될 것이다.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3조 제3항 및 제18조 제5항 원문

제3조. 용어의 해석

3.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란 제6조에 규정된 주체가 인가은행에 개설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활동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외화 또는 베트남동 지급계좌를 말한다 [...] (이하 “투자자본계좌”라 한다).

제18조. 시행 조항

5. **본 통첩 시행일 이전에 공포된 베트남국가은행 총재의 각 통첩에서 “직접투자자본계좌”, “외국인직접투자자본계좌”라는 용어를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로 대체한다.**

법적 근거: 제38/2026/TT-NHNN호 통첩 제3.3조 및 제18.5조 — 제06/2019/TT-NHNN호 통첩 제3.5조와 대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전문가가 언제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심층 법률자문과 서비스는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
A&T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받으세요.